

# 대한불교법화종 종도 및 불자여러분께 알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2008가합97398 징계처분무효 등 확인  
**원 고** 1. 박오복(법명: 지성)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 2층 201호  
 2. 이성복(법명: 해안)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44  
 3. 정봉수(법명: 법상)  
 창원시 도계동 241-1  
 4. 유종표(법명: 원봉)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 2  
 5. 이규열(법명: 현우)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3524-1  
 6. 정창수(법명: 송원)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산 2  
 7. 전길원(법명: 법만)  
 서울 중랑구 중화동 274-63  
 8. 박해언(법명: 정래)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 13-9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조영하

**피 고** 대한불교 법화종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1-73  
 대표자 총무원장 김용대(법명: 해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릉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9. 4. 29  
**판결선고** 2009. 5. 27

### 주 문

- 피고가 2008. 9. 10. 원고 박오복, 이성복, 정봉수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각 징계 처분, 원고 유종표, 이규열, 정창수, 전길원, 박해언에 대하여 한 제적 및 종권박탈의 각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4, 내지 16, 21 내지 23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모두 포함) 을 제4 내지 8, 10, 17, 24 내지 30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들이고, 소의 김용대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2005. 4. 20. 개회된 피고 종단의 제 68차 임시중앙총회를 통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승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종단의 일부 승려들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이하 '정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화추진위원회 명의로 2008. 7. 29.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총무원장 해륜(김용대)스님이 재직 하며 저질로온 부정부패의 총무행정과 패륜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총무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은 대한불교 법화종 중앙총회가 엄연히 직분을 다하여 부정부패의 총무행정과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감시감독하여 작금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그에 방관하였고 오히려 총무원장의 그 같은 행위에 아합하는 몇몇의 중앙총회의원까지 있어 정화추진위원회 스님들과 모든 종도들은 더 이상 중앙총회를 믿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총회는 해륜(김용대)총무원장 재직시 시행해온 입법, 예산, 결산, 감사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중앙총회는 종도를 대표한 기구임에도 아직까지 한번도 총회회의 내용과 입법 내용을 종도에게 고지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중앙총회가 그 임기 중에 행하여 온 모든 것을 2008. 8. 15.까지 공개하여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위 1,2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대책위원회 스님들은 그 책임을 짊어고 확실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 이외에도 정화추진위원회는 2008. 8. 7 각 사안 주지 앞으로 총무원장 및 임직원들의 부당부정행위를 신고해 풀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는가 하면, 2008. 8. 20 잠지인 현대불교에 총무원장 이하 임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몇 임직권과 결합하여 종도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사람을 소위 종찰이란 명목으로 공갈협박하고 또는 갈취하여 그들만의 배 불러는데 현안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벌, 출가사찰의 허위, 속세법에 의한 벌금형, 종로가 구속되는 폭행사건, 비구니와의 부적절한 관계, 검찰교구의 집단탈종, 교회사, 대방사, 급불사, 안정사, 흥국사 그 외 이투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현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 피고 종단의 총무원 감찰부장은 원고 박오복, 이성복, 유종표, 이규열, 전길원에 대하여 2008. 8. 8.부터 8008. 8. 28. 까지의 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2008. 7.29.자 결의문 발표와 관련하여 총무원에 등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종단은 2008. 8. 11. 임시중앙총회를 열어 종헌 제90조를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다.  
 바. 피고 종단은 2008. 9. 6. 개회된 총무원임원회의에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박오복, 이성복, 정봉수에 대하여는 체탈도첩의, 원고 유종표, 이규열, 정창수, 전길원, 박해언에 대하여 제적 및 종권박탈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8. 9. 10.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징계자는 본종의 종헌, 종법에 있는 종단 내부적 부담함이나 이의를 본종 중앙총회 또는 총무원 각 기구에 청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징

계자의 해종행위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이유로 본 종단 총무원 감찰부로부터 3차례 등원요청을 받고도 계속 불응하면서, 종단의 법통과 안정을 파괴는 물론이고 종단의 중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다른 승려의 명까지 도용하여 종단에서 알지 못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하여 2008. 7. 29. 확인된바와 같이 본종의 총무원장, 총무원 임원 그리고 중앙총회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유인물을 전국 사찰에 우편으로 유포시키고, 또한 신문에 광고하여 전국 각 사찰에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음

사. 실제로 총무원장 김용대는 ① 1999. 11.경 피고 종단의 이사직에 임후보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한양대학교 기계과 3년 중퇴' 및 '통도사 백련사 입사'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②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 청룡암이 피고 종단에 증여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종단에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단에 등록된 사찰에 대한 주지임명권을 근거로 소의 오명이를 협박하여 30,000,000원을 갈취하고, 화봉사의 소유권이 피고 종단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소의 최소수으로부터 30,500,000원을 사취하고, 오명이가 위와 같은 갈취사실을 행사고소하려 하자 오명이를 협박하여 행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2호, 김용대가 부산지방법원 2005노3489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06도6681호로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받은 바 있으며, ③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이던 2003. 3. 10.경 피고 종단 소속의 비구니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④ 총무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소의 위술환이 '대한불교법화종 교회사'가 아니라 '교회사'라는 명의로 교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술환을 주지에서 해임시키고 소의 백정환을 교회사의 주지로 임명하여 등기명의를 변경하였는데, 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해임처분이 징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3176판결, 이후 피고 종단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22223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09다 4732호로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판결된 바 있으며 ⑤ 급불사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2차례나 급불사 대표자 명의를 모용하여 급불사 소유의 불당과 주택 및 그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바 있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종단의 종헌 및 종법은 다음과 같다.

### [종 헌]

- <총치 제 7장 총무원>  
 제39조 3. 총무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찰주지와 종단직원 및 임원을 임명위촉하고 그 취임을 인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4. 총무원장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려에게 도첩을 수여하고 승려 및 신도에 대하여 포상, 징계, 사면 또는 특권을 명할 수 있다.  
 <총칙 제14장 상벌위원회>  
 제 73조 상벌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원로원 추천위원 3인  
 2. 총무원장 추천위원 2인  
 3. 포교원장 추천위원 2인  
 4. 당연직: 총무원장, 포교원장  
 제 74조 상벌위원회는 상벌위가 부의한 승려 및 신도(랑건주 포함)의 상벌사항을 심의하고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 실행하게 한다  
 제75조 상벌위원회는 수시 총무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총칙 제17장 상벌>  
 제 88조 본종 승려의 선행과 비행에 대한 포상징계와 경감면사 및 복권 등은 상벌위원회를 경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단, 임명권자는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될 시는 당해 원의에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는 다음 방법으로 행한다

- ①체탈도첩 승적을 소제하고 도첩 및 승려증을 회수한다. 체탈도첩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이나 재투도할 수 없다.
- ②제적, 종권박탈 본종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여, 승적에서 제적시킨다. 제적, 종권박탈을 당한 자는 종단의 모든 총무직 및 승니의 분한이 자동상실된다.
- ③종권정지 가. 징계 집행기간 중 일체의 종단 총무직 및 주지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한은 최대 1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로 한다. 다. 종권정지 징계를 당하면 기간 중 모든 종단 총무직 및 승니의 분한이 자동상실 된다.
- ④법계수락 법계원부를 소제하고 법계증서를 회수한다.
- ⑤면직 종단 총무직은 물론 주지지도 자동상실한다.
- ⑥법계강급 1급 또는 2급 이상의 법계를 강급한다
- ⑦유직 징계 집행기간 중 종단의 일체의 총무직 및 주지직이 정지된다. 기간은 최하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한다.
- ⑧견책 및 문서견책 구두 및 문서로서 비행내용을 경고한다.

### 징계적용

1. 체탈도첩, 제적 및 종권박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체탈도첩 또는 제적, 종권박탈 처분의 징계에 처한다.  
 나. 종정 교시를 위배한 자  
 다. 탈종, 개종도도 및 아합하여 파당을 형성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파괴하여 반종행위를 한 자  
 라. 종단 내부적으로 청원 및 시정 절차를 전혀 구하지 않고, 종단법통과 안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사직당국 또는 법원에 민형사간 제정 및 도모한 자.  
 제 91조 선행, 비행의 종류와 포상, 징계처분의 경증과 또는 경감, 면사, 복권 등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 [총무원법]

- <제3장 원의>  
 제5조 다음의 사항은 원의를 거쳐 처리한다.  
 5. 종헌 및 종법에 의하여 총무직원의 임명에 관한 일  
 7. 총무직원의 상전 및 징계에 관한 일

### [총무직원법]

- <제1장 총칙>  
 제2조 총무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종회 또는 기타회의를 통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 선임직원  
 2. 각급기관장의 내신추천 또는 제청을 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리  
 3.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  
 4. 전 조항 이외에 종헌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  
 <제4장 직무>  
 제 14조 1. 총무직원으로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6개월 이상 있을 때  
 나. 종단의 화합을 파괴한 행동으로 반종행위를 하였을 때  
 다. 직무상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라. 종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마.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전항 제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면직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제청에 의한 총무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5장 상벌 및 징계>  
 제 16조 총무직원의 징계는 종헌 제 88조에 의한다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나아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어떠한 해종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실제상 징계사유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징계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무거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종헌에는 승려에 대한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경하여 임명권자가 행하되, 다만 임명권자가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원의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88조)되어 있는데, 피고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은 채 총무원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앞서 본 종헌, 종법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종단에는 총무원, 포교원, 원로원이 있고, 총무원과 포교원에는 각 원의 임원들로 구성된 원의가 있으며 (총무원법 제6조, 포교원법 제5조), 총무원장과 포교원장에게는 위 각 원의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종헌 제 37, 44조, 총무원법 제7 내지 9조, 포교원법 제7,8조), ② 총무직원법에 의하면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직원이나 종헌종법 또는 기타 법규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한 직원은 총무직원이라고 규정(총무직원법 제2조, 제3, 4호)되어 있으며, ③총무원법에는 총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일은 총무원의 원의의 처리사항이라고 규정(총무원법 제6조 제7호)되어 있고, 총무직원법에는 총무직원의 징계는 종헌 제88조에 의한다고 규정(총무직원법 제 16조)되어 있는 한편, 포교원법에는 포교원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되어, ④ 또한 총무직원법에는 임명권자가 총무직원에게 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총무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그 중 특정한 사유로 면직시킬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면직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총무직원법 제14조)되어 있다. 이와같은 종헌종법의 전체 규정체제에 총무원 원의와 상벌위원회의 구성원, 피고 종단의 승려 및 신도 중 총무직원인 자와 아닌 자의 역할과 그 지위 등을 고려하면, 종헌 제 88조는 상벌위원회가 승려 및 신도에 대한 상벌사항을 심의하되, 총무원이나 포교원의 직원을 포함한 총무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무원장이나 포교원장 등 임명권자가 상벌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총무원 원 의에서 그의 상벌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총무직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종헌 제88조 본문에 따라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 경유 없이 총무원 원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 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재웅  
 판사 이지혜  
 판사 한지형

정본입니다.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이 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 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법화종 정화 추진 위원회 일동

대구 달서구 유천동 120-1 화성파크리젠시 103동 201호 선불사 / 전화번호 053)643-4771, 팩스 053)643-4772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전국 사암 스님들께서는 현 총무원장에게 불이익을 받고 계시거나 받은분은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